

#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청소년 비행 예방 — 警察活動을 中心으로 —

김형청

(경찰청 방법지도과장)

## I. 序 論

오늘날 대부분의 社會學者들은 작은마을, 촌락, 읍, 시, 거대도시의 일부지역과 같은 사회적·지리적 조직의 단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地域社會」란 말을 사용한다. 간단히 말하면 地域社會(communitiy)란 人間의 地域共同體를 말한다. 즉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共同意識(sense of identity)를 가지고 조직한 生活圈을 가리킨다.

지역사회에서는 대체로 對面이 가능하고 그 속에서 居住하며 日常生活의 대부분을 영위하는 바, 일반적으로 小規模의 地域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주민들이 공동체의식과 유대감을 갖

는다는 전제하에서 地域社會의 규모는 훨씬 확대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sup>1)</sup>

그리하여 Hillery는 地域社會의 特徵的 要素로서 ①地域性(area)－지리적 변인 ②社會的 相互作用(social interaction)－사회학적 변인 ③共通紐帶(communities)－심리학적 변인을 들고 있다.<sup>2)</sup>

이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지역사회와 경찰관계는 경찰부서와 지역사회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작용이나 관계의 모든 형태로서 설명될 수 있다.

사실상 경찰은 地域社會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地域社會의 구성요소이며 地域社會의 존재 없이는 경찰의 존재이유가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警察의 任務는 “범죄 및 무질서의 방지와 치안유지”라는 면과 “개인의 생명, 신체

1) 金信福, 發展企劃論(서울:博英社, 1983), pp. 214-215.

2) George A. Hillery, "Defintion of Community : Area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 (June. 1955), p. 118.

및 자유보호”라는 면에서 본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본래의 임무는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구성원을 위해서 부과된 목표의 실현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찰과 지역사회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肯定的인 相互作用 을 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 基本原理는 우선 지역사회 관계는 공지(information)을 통해서 一般大衆의 이해를 얻으려는 노력에 근거해야 하고, 일반대중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는 시민의 믿음과 존경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으며, 일반대중의 지원은 법률의 존경, 경찰업무에의 협조 및 개선조치의 찬동 등에 대해 요청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원리가 수립되고 지켜진다면 경찰과 국민의 協力關係는 원만히 이루어질 것이며, 지역사회에서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 특히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警察豫防活動은 지역사회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本稿에서는 地域社會에 있어서 경찰의 청소년 범죄예방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豫防戰略을 제시하려고 한다.

## II. 地域社會에 대한 犯罪의 影響과 動向

우선 지역사회 관계는 공지(information)을 통해서 一般大衆의 이해를 얻으려는 노력에 근거해야 하고, 일반대중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는 시민의 믿음과 존경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으며, 일반대중의 지원은 법률의 존경, 경찰업무에의 협조 및 개선조치의 찬동 등에 대해 요청되어야 한다.

### 1. 犯罪가 地域社會에 미치는 영향

Durkheim은 어느 정도까지의 범죄행위는 사회의 진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은 健全社會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했다.<sup>3)</sup> 여기서 그는 그 社會가 잠재적으로 용납하는「平均的 犯罪水準」이라는 것을 상정하고서, 이 수준을 넘는 경우에만 이를 病的 現狀으로 보려고 하였다. 이 경우에 이르면 地域社會는 犯罪로 부터 상당한 위험을 받게 되는 것이다. 1990年10月13日 “犯罪와의 戰爭” 선포는 犯罪가 正常水準을 넘어 있음을 뜻하는 바, 一定水準을 넘는 犯罪下部文化圈의 擴大는 總體的 文化圈을 축소시키고 압박하게 된다.

社會에서 범죄발생률이 증가하면 그만큼 被害者가 증가하고, 加害者와 피해자간의 갈등이 증폭되기 마련이다. 나아가 그들간의 不信은 주민간의 신뢰의 벽을 허물어 버리고 法的 權威와 尊敬까지 제거해 버릴 것이다.

3) 慎鎮揆, 刑事政策(서울 : 法文社, 1982), p. 273.

그리고 犯罪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해 저서 사회전반에 걸쳐 부정적 상황을 조성하며 급기야 社會解體(social disorganization)에 이르게 된다.<sup>4)</sup>

## 2. 犯罪의 下方硬直現狀

우리나라는 全般的으로 볼 때, 1960년에 79달러였던 1人當 GNP가 1984년에 1,999달러에 이르러 中上位所得國家群(Upper-middle-income countries)에 들게 됐으며, 1995년에는 1만달러에 이르러 先進國 문턱에 와 있게 되었으나 期間의 物質的 價値中心, 生産優先主義的 經濟政策으로 인하여 물질적 가치를 위해 人間的 價値가 희생되고, 생산과 수출을 위해 분배와 복지가 희생됨으로써 人間性的 황폐화를 가져 왔으며, 전통적인 가족 구조는 核家族化 되면서 가정의 사회통제 기능이 미약해 졌는 바, 고도성장이 비인간성의 촉진에도 크게 작용했으라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제반 여건들이 犯罪문제를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sup>5)</sup> 그리하여 우리사회에서의 犯罪는 公式統計에 의하면 1976년을 기점으로 犯罪가 下方硬直性을 띠면서 점증하여 1995년에는 1,359,094건으로 1964년의 433,

585건에 비하여 313.46%가 증가했는 바,<sup>6)</sup> 우리나라에서 1970년 이후 犯罪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少年犯罪의 동향을 보면 1964년에 전체 少年범이 39,118명이던 것이 1995년에는 123,407으로 315.5% 증가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犯罪는 전체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따라 少年범죄도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3. 靑少年犯罪의 集團性·凶暴性

1995년11월30일 教育部의 발표에 따르면, 全國 10,285개 初·中·高校에 재학하고 있는 8,504,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바, 학생폭력씨클은 중학교 288개, 고교 448개, 남녀혼성씨클 303개 등 1,039개이며, 이들에게 暴行을 당한 학생은 국교 43,000여명, 중학교 103,000여명, 고교 49,000여명 등 196,0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품을 빼앗긴 학생은 국교 93,000여명, 중학교 252,000여명, 고교 77,000여명 등 총 422,000여명으로 被害額은 16억6천9백여만원으로 집계 됐다.

결국 학생 폭력씨클로부터 금품을 갈취 당

4) J. E. Coklin, The Impact of Crime(New York : Macmillan, 1975)

5) 金洞淸, 韓國 社會에 있어서의 犯罪방알 策에 관한 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1976년 法學博士 學位論文, pp.51-52.

6) 大檢察廳, 犯罪分析 1964-1993.

하거나 폭행을 당한 학생은 전체 학생의 7.2%인 61만여명이나 되고 있다.<sup>7)</sup>

이러한 범죄씨클은 남녀 중·고등학교에 독버섯 처럼 번지고 있으며, 학년마다 싸움 잘하는 서열을 만들어 집단 싸움까지 벌이고 있다고 한다.<sup>8)</sup>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에 의하여 금품을 요구받았으나 반항하는 同僚學生을 머리와 양팔을 꼼짝 못하게 붙잡은 뒤 청소를 하고난 구정물을 주전자에 담아 입에 부어 넣는가 하면<sup>9)</sup> 女學生 暴力組織은 여학생을 남치감금 폭행하고 난 후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인근 남학생 불량씨클 조직원들에게 여학생을「노리개」로 넘겨 집단으로 욕을 보이게 했다는 보도이다.<sup>10)</sup>

### III. 警察의 靑少年犯罪 豫防活動

#### 1. 防犯警察의 基本理念

청소년은 그들이 非行者라는 烙印을 받게 되면(烙印理論) 自己減價的 觀念을 형성시켜 逸脫行爲의 유혹이나 압력에 대하여 內的인 緩衝裝置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성인보다 쉽게 犯罪의 下部文化圈에 휩쓸리게 된다

(自己觀念의 理論)는 것을 생각할 때 청소년에게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警察의 犯罪豫防 活動은 청소년 범죄의 위험률을 예견, 인식, 평가하여 이를 감소 근절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기능은 경찰의 일부분이므로 그 운영은 民主的 能率的이어야 하는 바, 그 基本理念을 개설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타 경찰기능과 긴밀한 업무의 협조와 조정으로서 항상 방법기능을 최대한 발휘케 하여 綜合的인 警察機能을 항상 발전시키는데 노력한다.

둘째, 방범경찰의 사건처리, 범죄위해의 예방, 주민에 대한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능율화·합리화를 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사항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와 질서유지에 직접·간접으로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한 業務計劃을 수립한다.

셋째, 방범경찰의 식견과 실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개 경찰관의 소질, 능력, 경험 등을 고려하여 수시 敎養을 실시하고, 특히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定期的으로 敎育을 이수토록 한다.

넷째, 직무수행은 객관적으로 適法함과 동

7) 1995.12. 1. 東亞日報, 中央日報, 韓國日報, 朝鮮日報, 京鄉新聞 등 各新聞에 報道

8) 中央日報, 1995.11. 4

9) 東亞日報, 1995.12. 8. p. 39.

10) 中央日報, "마피아를 꿈꾸는 아이들", 1995.12. 1. p. 23.

시에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妥當性이 있어야 국민의 共感帶를 형성하며, 민주경찰의 기본 자세인 친절봉사의 바탕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 주민의 信賴를 획득해야 한다.

## 2. 靑少年 警察의 姿勢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一生동안 法執行의 客體가 된다. 그러므로 법집행의 量과 質은 모든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警察官은 수가 많고 24시간 지역사회에서 바로 국민곁에서 활동하므로 他 法執行機關 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집행관은 대개의 경우 경찰관을 의미하게 된다) 특히 靑少年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辨別力이 낮은 未完成의 人格體임을 유의하여 靑少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靑少年에게 警察官은 “保護하는 天使(Guardian angel)”<sup>12)</sup>가 되어 靑少年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여주는 지역사회의 어른이 되어야 한다. 다음은 靑少年 犯罪를 豫防하는 警察官의 姿勢에 관하여 중요한 基調事項을 제시한 것이다.

### 가. 科學主義

刑事科學뿐만 아니라 보다 넓게 心理學, 教

育學, 統計學, 醫學 등을 유효하게 靑少年 犯罪예방 정책에 적용하려는 과학주의는 靑少年 犯罪의 현황분석과 그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지도이념이 되어야 하는 바, 그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들면 첫째로 靑少年 犯罪와 관련된 모든 정책은 과학적 검토를 받아야 하고, 둘째로 靑少年 犯罪예방 정책에 과학주의를 적용함에 있어서 무리해서는 안되며, 셋째로 제반 과학적 접근은 靑少年犯罪와 예방정책의 상황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 나. 國親思想(Parens Patriae)

理智 薄弱하고 分別力이 부족할 뿐아니라 止불유예적 성격(moratorium)을 갖고 있는 소년에 대하여 책임만을 추궁하지 않고 국가가 後見者가 되어 그들에게 保護와 訓育을 통하여 정상적인 소년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이념으로 하는 國親思想은 靑少年警察이 靑少年 犯罪를 처리함에 있어서 직무수행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인 바, 그 구체적인 실천사항은 첫째로 靑少年 犯罪를 처리함에 있어서 가급적 強制手段을 억제하고, 둘째로 犯罪靑少年을 선도보호함에 있어서 스스로 개선 갱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하며, 셋째로 犯罪靑少年이 정상적인 소년으로 복귀한 후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隨時 指導的 保護活動을 하여야 할 것이다.

12) 다만 Taiwan 카운터 White River시 주민들은 경찰관을 가리켜 보통 “보호하는 천사(Guardian angel)”라고 칭한다(Ben Yi Tseng, "Crime Prevention in Taiwan, Republic of China", 警察大學 治安研究所, 治安論叢 第4輯, 1987, p. 179)

다. 教師精神

靑少年들이 중요한 지식을 이해하고 새로운 지식을 찾아내고 이미 습득한 지식을 적용하여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학습 과정에 유능한 조언자로서 역할을 하고 또는 그들의 인간적 성숙을 가지기 위하여 인생안내자로서 역할을 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의 규칙을 지키는 태도를 가르치기 위하여 훈육하는 教師精神<sup>13)</sup>은 靑少年警察의 思想으로 승화되어야 할 것인 바, 그 구체적인 실천사항은 첫째로 靑少年警察은 비행소년을 선도보호하는 경찰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警業)직무를 수행하고, 둘째로 靑少年警察은 非行靑少年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樂業)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며, 셋째로 靑少年警察은 靑少年犯罪를 인지하고 수사함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여(勤業)엄격한 교사상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sup>14)</sup>

靑少年에게 警察官은 “保護하는 天使(Guardian angel)”가 되어 靑少年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地域社會의 어른이 되어야 한다.

조)는 ①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②경비, 요인경호 및 대간첩 작전수행 ③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④교통의 단속과 유해의 방지 ⑤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이다.<sup>15)</sup>

이에 따라 경찰은 법률에서 정한 임무와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바, 그 가운데 犯罪防止 任務는 경찰활동의 核이라고 일컬어 지고 있다.<sup>16)</sup>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범죄예방 활동은 크게 一般防犯活動, 特別防犯 活動, 自律防犯活動, 綜合防犯活動 등 4가지 類型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1次的인 目的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sup>17)</sup>

첫째,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떤 죄를 범하였거나 또는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 또는 행하여 지려는 범죄에 관한 사실을 알고

3. 豫防活動의 手段과 方法

警察의 職務範圍 (警察官職務執行法 제 2

13) 김종서, 이영덕, 정원식, 개정증보 最新 教育學概論(서울 : 教育科學社, 1995), pp. 392-393.

14) 1. 揭書, pp. 398-403.

15) 警察法 제3조는 경찰의 임무에 관하여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규정하고 있다.

16) 李璜雨, “警察의 犯罪豫防活動”, 형사정책연구원, 제13회 형사정책세미나, 1994. 9.30, p.70.

17) 李璜雨, 前揭 論文 pp. 70-74 ; 경찰청, 외근경찰관 근무규칙(1995. 9.11 개정, 경찰청훈령 제168호) 참조.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행하는 검문 검색(不審檢問)은 犯罪搜查의 단서를 제공하거나 靑少年의 潛在的 犯因性的 表出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자녀지도, 방범대책, 기타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한 민사문제(민사관계 불간섭 원칙의 범위내에서) 등에 대하여 諮問, 斡旋, 連絡 등의 方法으로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는 활동(防犯相談)은 청소년 非行을 억제하고 경찰사고로 발전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

셋째, 관내의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년 문제, 안전사고 방지 등에 관하여 指導·啓蒙·連絡·相談 등을 행하고, 민원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하며, 주민의 협력을 얻어 예방정책 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수집활동(防犯尋訪)<sup>18)</sup>은 청소년을 선도보호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며 나아가 기본적 범죄예방 활동의 역할을 한다.

넷째, 잠재적인 범죄피해자에 초점을 맞추어 범죄발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상황과 배경에 주안점을 두고서 특정의 地域·施設·機關·業所·住居 등의 방범시설 현황을 점검하여 불비·결함이 있는 부분에 대한 필요한 지도조치(防犯診斷)는 청소년의 機會犯罪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다섯째, 전과자 또는 불량배로서 그 성격 환경에 비추어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자의 동정을 관찰·보호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고, 관찰기록을 보존하여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것(虞犯者 觀察保護)은 경찰의 청소년 범죄대책에 기여하고 범죄발생시 수사활동을 용이하게 한다.

여섯째, 범죄발생의 요인이 되는 기회를 방지 또는 차단하고 犯罪機會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제거하여 범죄행위의 표면 출현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순찰하는 근무(巡察活動)<sup>19)</sup>는 派出所 外勤勤務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비행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일곱째, 지역사회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해치고 미성년자의 심성을 惡化시키며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風俗營業所의 청소년 유해행위를 규제하는 것(有害環境 淨化)은 청소년의 범죄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그들을 선도보호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 IV. 戰 略

犯罪豫防은 범죄의 위험을 예견, 인식, 평

18) 防犯尋訪은 호구조사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던 戶口調査를 폐지하고 「방범심방규칙」을 제정하여 198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 외근경찰관의 기본근무에 속한다.

19) 순찰활동은 일반사회인의 일상적 생활을 평화롭고 질서있게 할 수 있는 경찰의 기본 임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경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책무이다.(村山眞雄, 警羅 警察의 研究, 東京 : 成文堂, 1990, p. 9.)

가하여 이를 감소, 근절시키기 위한 事前 活動을 뜻하는 바<sup>20)</sup> 1次的으로는 一般大衆을 대상으로 하여 물리적·사회적 환경들 중에서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環境設計, 이웃돌봐주기, 民間警備, 犯罪豫防教育을 실시하고, 2次的으로는 犯罪를 저지를 可能性이 높은 個人이나 集團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을 초기에 발견하고 非合法的 行爲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를 예방하며, 3次的으로는 實際犯罪者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하는 활동이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sup>21)</sup>

여기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非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주요 전략에 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 1. 靑少年犯罪者의 成人犯罪者로의 轉移遮斷

최근 연구에 의하면 소년범죄자가 성인범죄자로 轉移한 程度는 전체범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67%였다. 이러한 비율은 범죄경력에 기록된 범죄만을 조사했을 때에는 다소 떨어졌지만 그래도 소년범죄자 중의 약43%가

성인범죄자로 발전하였다. 특히 少年期 犯罪回數가 많을 수록 성인범죄로 轉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년기에 1회~2회 소년범죄자는 성인범죄율이 52%였고, 3회~4회의 소년범죄였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70% 그리고 소년범죄가 5회 이상이던 사람들중에서는 80%가량이 성인 범죄로 발전하였다.<sup>22)</sup>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청소년기의 犯罪經歷이 성장이후의 범죄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범죄 청소년의 재범을 방지·억제하는데 刑事政策의 역점을 두는 것은 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는 바, 이를 위해 몇가지 사항이 고려될 수 있다.

첫째, 열등학생의 학교에서의 除籍抑制인바, 制度圈에서의 社會化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각급 학교로부터 학생을 축출함은 그들에게 犯罪無價値를 습득하는 기회가 많은 환경속으로 보내는 결과를 가져오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범죄를 內面化하게 하여, 범행을 中和시키게 하며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하여 이것이 성인 범죄로 이르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非行化의 과정을 차단하기 위하여 학교

20) National Crime Prevention Institute(NCPL), understanding crime prevention(Boston : Butter worths, 1986), p. 2. ; Sawrence J. Fennelly, Handbook of Loss Prevention and Crime Prevention 2nd ed. (Boston : Butter Worths, 1989) p. 4.

21) Paul J. Brantingham and Federick L. Faust, "A Conceptual Model of Crime Prevention", Crime & Delinquency 22, 1976. 6. p. 292.

22) 김준호, 이순태 "소년범죄자의 성인범죄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95-04, 1995.

당국의 일률적 제적 조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不良學生에 대한 제적의 기준을 설정하고, 非行少年에 대한 처리도 합리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少年留置施設(juvenile detentia facility)의 운영인 바, 소년 범죄자가 성인의 범죄문화에 쉽게 동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烙印의 경험을 더 적게 하기 위하여 警察의 인지 검거단계에서 부터 法院의 판결단계까지 소년범죄자를 성인범죄자와 엄격히 분리 수용하여 성인범죄로 부터 反社會的 態度나 犯罪性向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여<sup>23)</sup>

비행소년들이 성인범죄화되어 범죄문제를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靑少年非行에 대한 社會遲滯(community lag)의 緩和인 바, 一時的 과오로 施設生活를 經驗한 靑少年에 대하여 「刑을 치른 새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前科者 또는 犯罪者」로 대하여 계속 과거의 非行을 문제시 할 경우 社會遲滯의 현상이 심각해져 更生復歸를 위한 노력을 힘들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地域社會의 공동 유대감을 강화하여 사회지체를 완화시켜 비행소년의 再非行을 抑制해야 할 것이다.

## 2. 未成年者 出入制限區域 運營

警察署長은 미성년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을 선도육성하며 비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된 營業場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기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하여 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지역을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미성년자의 출입제한구역의 출입제한 시간을 하오 8시부터 다음날 상오 5시까지로 하고 있다.<sup>24)</sup> 현재 淪落街 45개소, 遊興街 20개소, 虞犯地域 1개소 등 66개소를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sup>25)</sup>

제한구역에는 출입로 등 통행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청소년들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警告板을 설치하고, 경찰과 선도단체의 위원들이 주로 취약시간대에 순찰하면서 청소년들의 출입을 자제토록 하거나 귀가를 종용하고 있다.

1994년도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에 대한 非行靑少年 善導保護 實績을 보면 경찰, 교육, 행정공무원, 선도위원 등 연인원 123,907명을 동원하여 음주, 흡연, 싸움, 소란, 흥기 소지, 남녀혼숙 등 32,393건을 적발단속하여 895건을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193건을 이

23) 상계서, p.16.

24) 未成年者保護法제1조, 同法施行令제4조의2 참조

25) 文化體育部, 청소년 백서(1995, p. 353.)는 65개소로 되어 있으나, 1996년4월 1개소가 증가되었다.

##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청소년 비행 예방

첩, 통보, 여타는 현장 훈방하거나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등의 조치를 했고<sup>26)</sup> 제한구역내 有害業所 團束은 미성년자 출입목인, 윤락행위 또는 남녀혼숙 목인 등 총3,849건을 적발하여 구속 114건, 불구속 입건2,353건, 즉심회부 1,381건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2,005건

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취했다.<sup>27)</sup>

이러한 선도보호와 유해업소 단속 실적은 1992년에 비해 각각 34.7%,37.5% 감소했는바<sup>28)</sup>, 制限區域 設定은 청소년의 비행 방지와 유해업소의 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내에서 비

26) ○ 합동단속반 편성(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내)

[表1]

(단위 : 명)

구 분	계	경 찰	교육위교사	행정공무원	선도위원	기 타
1992	228,244	136,856	18,094	23,060	35,185	15,049
1993	149,442	90,034	11,423	13,136	25,203	9,646
1994	123,907	82,760	10,409	8,630	18,001	4,107

문화체육부, 청소년백서(1995), p. 354.

○ 비행청소년 선도보호 실적(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내)

[表2]

(단위 : 명)

구분	계	단 속 내 용						치 리			상담 카드	
		음주 깍연	싸움 소란 행위	흥기 소지	성 인 유기장 출 입	남녀 혼숙	기타	즉심	현장 귀가	보호자 인 계		이첩 통보
1992	49,635	17,438	7,521	177	284	209	24,006	1,454	38,541	9,168	472	1,304
1993	38,547	14,433	5,299	127	213	114	18,361	634	30,258	7,267	388	1,160
1994	32,393	12,873	5,325	164	229	181	13,621	895	25,198	6,107	193	979

문화체육부, 청소년백서(1995), p. 354.

27) ○ 유해업소 단속실적(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내)

[表3]

(단위 : 건)

구분	계	단 속						치 리			행 정 처 분
		풍속영업소 미성년자 출입목의	성 인 유 기 장 출입목인	윤락행위 남녀혼숙 목 인	음 란 비디오 방 영	미성년자 고용행위	기 타	구 속	불구속	즉 심	
1992	6,159	1,687	119	164	30	213	3,946	161	4,275	1,723	2,707
1993	5,866	958	64	672	49	95	4,028	126	3,461	2,279	2,941
1994	3,849	751	28	422	33	99	2,516	114	2,354	1,381	2,005

문화체육부, 청소년백서(1995), p. 355.

28) [表2]와[表3]참조

행정소년 선도보호를 활성화하고, 요건이 충족된 지역은 새로 제한구역으로 설정해야 할 것인 바, 신설 제한구역으로 고려될 수 있는 지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주방, 당구장, 노래방, 비디오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지역

둘째, 전과자나 우범자 또는 불량행위 청소년들이 출입하면서 등지를 틀고 범행을 모의하거나 주요 거점으로 삼고 있는 지역

셋째, 호텔, 여관, 여인숙 등이 밀집되어 있으면서 환락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

이와 같은 구역을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할 수 없을 때는 保護區域으로 책정하여 지역사회에서 유지, 종교인, 선도단체, 교사, 행정공무원, 경찰 등이 협력합심하여 청소년을 선도보호하고 유해환경을 정화시켜 나가야 한다.

### 3. 警察의 “다이버전” 政策擴大

사법행정에 관한 대통령위원회(The President's Commission of Law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는 범죄에

미치는 낙인(Labeling)의 나쁜영향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즉 청소년이 경미한 비행은 저지른 후 형사사법 체계에 처음으로 접하여 “非行少年”으로 낙인찍히는 순간에 만성적인 심각한 비행소년이 발전된다고 했다.<sup>29)</sup>

학자들은 경찰의 체포, 연행, 구금으로 부터 생기는 소년에 대한 비행자로서의 낙인은 비행행위를 강화해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있다.<sup>30)</sup> 실제로 범죄학생이 警察에 체포되어 檢察의 조사를 받고, 격하의식(Degradation Ceremonies)이라는 法院의 재판을 받고 처벌 받아 형사절차를 거치는 동안 그의 학생신분과 자기자신에 대한 自我概念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변화가 2次 犯罪의 原因이 되게 한다.<sup>31)</sup>

이와 같은 낙인의 악영향으로 인하여 선도될 수 있는 청소년이 심각한 범죄자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보호 및 관찰로 대처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다이버전인 바,<sup>32)</sup> 범죄 청소년과 최초로 만나게 되는 警察段階에서 다이버전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 낙인

29) The President's Commission on Law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 1967. C : 417.

30) 金甫煥 “소년범 인신구속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법무부, 청소년범죄연구 第3輯(1985), p. 9 ; Richard A. Cloward and Lloyd F. Ohlin, Delinquency and Opportunity (Glence : Free Press, 1960), pp. 124-130.

31) 金炳祥, “青少年非行과 處罰”, 法務部, 青少年犯罪研究 제1집(1983). p.221.

32) 金承九, 外國의 少年犯罪處理 制度和 實態,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92-21(1994)

효과를 최소화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sup>33)</sup> 이를 위해서 경찰의 다이버전 조치를 제약하고 있는 관계법률(형사소송법, 소년법 등)을 개정하여 검찰의 善導條件附 猶豫制度를 경찰단계에까지 확대할 것이 요망된다.

**낙인의 악영향으로 인하여 선도될 수 있는 청소년이 심각한 범죄자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보호 및 관찰로 대처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다이버전인바, 범죄 청소년과 최초로 만나게 되는 警察段階에서 다이버전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 낙인효과를 최소화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경찰이 다이버전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소년사법운영에관한국제연합최저기준규칙」(일명 북경률 1985. 8. 9 제7회 국제범죄방지회의 결의, 국제연합총회 채택) 제 11조의 다이버전에 관한 기본적 지침을참고 해야 할 것이다.<sup>34)</sup>

#### 4. 警察의 犯人 檢舉率 提高

경찰의 범인검거는 處罰의 確實性和 연결되어 있다. 즉 범인에 대한 검거률이 높을 수록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연구결과에 의하면 潛在的 犯人들은 검거될 확률이 높으면 법적인 처벌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범행을 자제한다고 한다.

실제로 범인들은 형사절차를 밟는 동안의 고통과 수모가 괴로운 것이지 처벌자체는 두려워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경찰의 범죄인 체포 활동은 潛在的 犯罪者를 억제하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찰의 범인 체포활동은 장래 범죄자의 증감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범죄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즉, 범인체

33) 최인섭,진수명,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과 민간인 참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99-23(1995), p.129.  
 34) 「少年司法運營에關한國際聯合最低基準規則」(일명 北京률, 1985. 8. 9 제7회 국제범죄 방지회의 결의, 국제연합총회 채택) 제 11 조(다이버전)  
 ①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하여 정식재판이 아닌 방법에 의한 소년범죄자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② 경찰, 검찰 기타 소년사건을 취급하는 기관은 각주의 법제도의 목적 아래 정하여진 기준과 이에 포함되는 원칙에 따라 정식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재량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권한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③ 지역사회 등의 적당한 서비스에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다이버전은 그 결정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재심리가 가능하다는 條件아래 少年 또는 父母나 保護者의 同意를 필요로 한다.  
 ④ 소년사건의 재량에 의한 처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슈퍼비전, 지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등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포는 범죄발생률, 범죄자의 범죄활동의 종료 시기, 범죄활동 자수기간, 재범기간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sup>35)</sup> 또한 경찰의 체포에 의한 非公式的 制裁效果는 첫째로 사회적 성취 및 지위가 체포에 의하여 훼손됨으로써 고용관계, 결혼관계 등에서 받게될 不利益 (commitment cost), 둘째로 가정 및 동료집단들과 같은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損失 (attachment cost), 셋째로 체포로 인한 名譽毀損 (stigma of arrest) 등인 바, 공식적 제재 효과와 상호작용하여 범죄발생을 억제한다.<sup>36)</sup>

이러한 경찰의 범죄인 검거(체포)를 제고 효과는 청소년의 범죄예방에 있어서 그대로 타당하므로, 地域社會에서의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활동은 범인검거의 주력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다.

여기에서 警察의 犯罪人 檢舉率 提高를 위한 方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鑑識體制의 整備, 現場搜查能力者 등의 양성을 통하여 初動搜查活動을 확고히

하여 犯罪現場을 완벽하게 保存하고 證據를 확보하며 신속히 범인을 검거해야 한다.

둘째로 경찰의 모든 기능이 긴밀히 협조하여 綜合搜查體制를 구축하여 범죄정보를 다양하게 수집 분석하고 범인검거에 있어서도 기능을 초월하여 협력해야 한다.

셋째로 검찰과 경찰의 二元的 搜查體系를 지양하여 搜查指揮를 一元化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정비가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 5. 靑少年 有害業所 淨化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sup>37)</sup>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食品衛生法施行令 제7조제8호), 목욕장업중 터키탕업 및 유기장업중 성인용 전자유기장업(公衆衛生法施行令 제3조), 사행행위영업(射倖行爲等規制法 제2조제1항), 무도학원·무도장영업(風俗營業規制에關한法律 제2조제5호), 노래연습장업(風俗營業規制에關한法律施行令 제2조제5호), 제

35) Smith and Gartin, "Specifying Specific Deterrence : The Influence of Arrest on Future Criminal Activ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 1989. pp. 94-105.

36) K.R Williams and R. Hawkins, "Perceptual Research on General Deterrence : A Critical Review", Law & Society 20. 1986, pp. 545-572 ; D.S. Nagin and R. Paternoster, "The Preventive Effects of The Perceived Risk of Arrest : Testing An Expanded Conception of Deterrence" Criminology 29. 1991. pp. 561-587 ; L.W. Sherman and D.A. Smith, "Crime, Punishment, and Stake in conformity : Legal and informal Control of Domestic Viole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7. 1992. pp. 680-690.

37) 청소년 관련 유해업소는 (1) 그 성격이 객관적으로 유해하다고 인정되고 법적으로 청소년들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업소 (2) 자체적으로는 유해업소로 분류되고 있지 않으나 하더라도 그 곳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유해성을 지닌 업소를 말한다(李文朝, "有害環境이 靑少年 犯罪에 미치는 影響",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8회 형사정책 세미나, 1992.10.30. p.11)

조담배의 소매업(담배事業法 제16조제1항), 유독물제조업·유독물관매업 및 유독물취급업(有害化學物質管理法 제10조제1항) 기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영업 등인 바,<sup>38)</sup>

이러한 업소들은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저해하고 청소년 범죄를 유발시킬 우려가 농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유해한 업소의 경영자와 종업원의 청소년 유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될 수 있다.

첫째, 유해업소 밀집지역과 우범지역에 대하여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지속적인 감시와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경찰활동을 가시화하기 위하여 초소를 설치한다.

둘째, 고질적 범법업소에 대해서는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하고 관리책임 경찰관을 지정하여 재범을 방지하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반복적 단속을 병행하고

셋째, 유해업소의 유해행위를 유형화하여 TV, Radio, 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여, 잠재적 범인성업소의 유해행위 동기를 억제한다.

넷째, 청소년 유익업소를 모범업소로 선정하여 세제상의 혜택 등 특별우대정책을 실시

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유해업소와 차별화 시책을 강구하므로서 유해업소들이 자진하여 유익업소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 IV. 結論 및 提案

지금까지 地域社會의 특성과 靑少年 非行 현황을 고찰하면서 경찰의 청소년 비행예방 활동의 기본이념, 소년경찰의 자세, 예방활동의 수단과 방법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청소년 비행예방의 주요 전략으로 첫째로 청소년 범죄자의 성인범죄의 전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학생이 성장하면서 한두번 겪게 되는 실수(one time mistakes)를 이유로 학교에서 축출되는 것을 억제하고 범죄소년이 성인 범죄인과 함께 수용하는 것을 지양하며 전과 소년범의 사회지체를 완화하고, 둘째로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제를 확대 실시하여 운영은 미성년자의 조기 귀가를 종용하고 그들을 더 많이 건전문화 공간으로 유도하며 셋째로 경찰의 “다이버전” 정책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의 형사절차를 단축시켜 그들이 비행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넷째로 경찰의 犯人 檢擧率 提高하여 청소년 비행을 억제하며, 다섯째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정화하여 유해환경으로 부터 청소년을

38) 靑少年基本法施行令 제57조제1항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필자는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몇가지 현안을 제안해 두고자 한다.

첫째, 未成年者에 대한 夜間通行禁止制度의 도입인 바, 이에 대하여 찬·반 양론이 대두되고 있으나, 청소년이 심야에 거리나 공원 등을 통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犯因性 環境에의 接近을 遮斷하여 그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맞는 청소년 야간통행금지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sup>39)</sup>

둘째, 가출소녀, 윤락녀, 미혼모 등 疎外되고 冷待받고 있는 사람들이 犯罪下部文化圈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복지 대책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sup>40)</sup>

셋째, 경찰과 학교와의 협력관계를 조성하여 학생의 일탈과 범죄를 방지하고 청소년 문제를 공동으로 처리하며 또한 경찰과 학생간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경찰에 대한 이미지

를 개선하여 좀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警察, 學校連絡管制(police-school liason programs)를 도입에 대하여 적극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범죄에 대한 言論報道는 公益 우선적이고 범죄예방적인 측면의 접근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므로<sup>41)</sup> 언론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언론 매체의 노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청소년 범죄에 대한 보도는 더욱 신중히 보도하는 태도가 요망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소년경찰의 언론대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죄를 범한 사람은 체포와 처벌의 위험, 죄의식,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시간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함과 같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청소년들에 강력하게 인식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sup>42)</sup>

끝으로 소년경찰의 위상문제인 바, 지역사

39) 워싱턴 시의회는 JUVENILE CURFEW ACT OF 1995를 제정하여 미성년자의 야간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은 17세미만의 청소년이 안전야간통행금지 시간에 워싱턴 DC의 거리와 공원, 그리고 야외 공중장소에서 면제된 활동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머물 수 없다. 안전 통행금지시간과 기간은 7월과 8월은 오전 12시 01분부터 오전 06시까지이다. 그외의 안전통행금지 시간은 일요일부터 목요일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전 12시 01분부터 오전 6시까지이다. 이 규정을 위반한 청소년은 워싱턴 메트로 폴리탄 경찰관들에 의해 구금된 후 청소년 야간통행금지 유치장으로 수용된다. 연란받은 청소년의 부모나 보호자는 필수적으로 야간통행금지 유치장으로 출두하여 본인들의 자녀들을 구제해야 한다. 청소년 야간통행금지법을 위반한 사람은 \$500을 초과하지않는 벌금을 물게된다.

40) 미국에서는 가출소녀들이 별다른 간섭을 받지 않고 며칠씩 더 머무르다 마음을 정리 한 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쉘터(shelter)」를 운영하고 있다.

41) 이병기,이기용, "범죄보도가 시민의 범죄인식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93-31(1995) p. 119.

42) William A. Luksetch and Michael D. white, Crime and Public Policy (Canada Toronto : Little, Brown & Company, 1982) p. 2.

회에서 경찰이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비행청소년을 선도 보호함에 있어서 실효성을 제고하려면 우선 경찰기본법에 청소년 처우 관련 사항을 선언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촉법소년·우범소년을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부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는 法院 先議主義를 범죄소년에게까지 미치게 하는 법률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1) 金信福, 發展企劃論, 서울 : 博英社, 1983.
- (2) 金甫煥, "소년범 인신구속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法務部 靑少年犯罪研究 제3집, 1985.
- (3) 金承九, 外國의 少年犯罪 處理制度和 實態, 한국형사정책원 연구보고서 92-21, 1994.
- (4) 김중서.이영덕.정원식, 개정증보 最新 敎育學概論, 서울 : 敎育科學社 1995.
- (5) 김준호.이순태, 소년범죄자의 성인범죄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한국형 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95-04, 1995.
- (6) 金洞淸, 韓國社會에 있어서의 犯罪방안책에 關한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1976년 法學 博士學位 論文
- (7) 愼鎭揆, 刑事政策, 서울 : 法文社, 1982.
- (8) 李文朝, "有害環境이 靑少年 犯罪에 미치는 影響",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제8회 刑事政策 세미나, 1992.10.30.
- (9) 이병기.이기웅, 범죄보도가 시민의 범죄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93-31, 1995.
- (10) 李璜雨, "警察의 犯罪豫防活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13회 형사정책세미나, 1994. 9.30.
- (11) 全炳梓, "靑少年 非行과 處罰" 法務部, 靑少年 犯罪研究 제1집, 1983.
- (12) 최인섭.진수명,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과 민간인 참여,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연구보고서 93-23, 1995.
- (13) 경향신문.동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 1995.12. 1. 각 신문 사회면
- (14) 대검찰청, 범죄분석, 1964-1993.
- (15) 동아일보, 1995.12. 8.
- (16) 문화체육부, 청소년 백서(1995)
- (17) 서울신문.한국일보, 1996. 3. 8.
- (18) 「少年司法運營에 關한 國際聯合最低基準規則」일명 北京律, 1985. 8. 9. 제7회 국제범죄 방지회의결서, 국제연합 총회채택
- (19) 방범심방규칙, 경찰청훈령 제9호, 1991. 7.31.
- (20) 중앙일보, "마피아를 꿈꾸는 아이들", 1995.12. 1.
- (21) 중앙일보, 1995.11. 4.
- (22) 중앙일보, 1995. 5. 9.

- (23) 虞犯者觀察保護規則, 1991. 7.31. 경찰  
청예규 제17호
- (24) 青少年基本法施行令
- (25) 村山眞雄, 警羅 警察의 研究, 東京 : 成  
文堂, 1990
- (26) Ben Yi Tseng, "Crime Prevention  
in Taiwan, Republic of China", 警察大學  
治安研究所, 治安論叢 제4집, 1987.
- (27) Brantingham Paul J. and Federick  
L. Faust, "A Conceptual Model of Crime  
Prevention", *Crime & Delinquency*. 22,  
1976. 6.
- (28) Conklin, J. E, *The Impact of Crime*  
New York : Macmillan, 1975
- (29) Fennelly, Lawrence J. *Handbook of  
Loss Prevention and Crime Prevention*  
2nd ed. Boston : Butter worths, 1989.
- (30) JUVENILE CURFEW ACT OF  
1995, 워싱턴시의회
- (31) Hillery, George A. "Definition of  
Community : Area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 June, 1995.
- (32) Luksetch, William A. and Michael  
D. white, *Crime and Public Policy*, Cana-  
da Toranto : Little, Brown & Company,  
1982.
- (33) Nagin D. S. and R. Paternoster, "  
The Preventive Effects of the Perceived  
Risk of Arrest : Testing An Expanded  
Conception of Deterrence", *Criminology*  
29, 1991.
- (34) National Crime Prevention Institute  
(NCPL), *Understandig Crime Prevention*,  
Boston : Butterworths, 1986.
- (35) Sherman, L.W. and D.A.Smith " "  
Crime, Punishment and Stake in Con-  
formity : Legal and Informal Control of  
Domestic Viole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7, 1992.
- (36) Smith and Gartin, "Specifing Specif-  
ic Doterrence : The Influence of Arrest  
on Future Criminal Activ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 1989.
- (37) The President's Commission on Law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of Jus-  
tice, 1967, C : 417)
- (38) Williams, K.R. and R. Hawkins, "  
Perceptual Research in General Deter-  
rence : A Critical Review", *Law & De-  
linquency* 20, 1986.